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9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박상웅 · 김상훈 · 이달희
김대식 · 송석준 · 김미애
박덕흠 · 이상휘 · 강승규
이종욱 · 최보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법률·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창업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움.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 지원 근거가 미흡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등 우대) ①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5조의3(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등 우대) ① 정부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